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호봉의 획정) 보수 지급을 위한 호봉의 획정(경력인정 포함)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반직공무원의 호봉 획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11주”를 “15주”로, “5일”을 “10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를 입은 국장 또는 직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국장 또는 직원은 5일(같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으로서 장기간 피해수습이 필요하다고 관할지방우정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남성 국장 또는 남성 직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국장 또는 직원이 신청하면 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30조제11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가 있는 국장”을 “국장”으로,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을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어린이집등”을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 공식 행사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녀”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손자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⑫ 제1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⑬ 여성국장 또는 여성직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3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장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이 별정우체국에 국장 또는 직원으로 다

시 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본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직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제36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국장 또는 직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국장 또는 직원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장에 대해서는 관할지방우정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에, 직원에 대해서는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에 지체없이 징계의결 등을 관할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징계위원회에서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경우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에게, 국장은 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호봉의 확정) ① 보수 지급을 위한 호봉의 확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반직공무원의 호봉 확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호봉의 확정) 보수 지급을 위한 호봉의 확정(경력인정 포함)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반직공무원의 호봉 확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장 및 직원이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이와 유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환산한 경력연수를 합산하여 정산한 호봉으로 한다.	
제30조(특별휴가) ① ~ ⑥ (생략)	제30조(특별휴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장 및 직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국장 및 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를 입은 국장 또는 직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국장 또는 직원은 5일(같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으로서

⑧ 임신 중인 국장 또는 직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그 국장 또는 직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 5. (생략)

<신설>

⑨ (생략)

⑩ 자녀가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장기간 피해수습이 필요하다고 관할지방우정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

-----.

- 15주 -----

10일--
<삭제>

3. ~ 5. (현행과 같음)

⑨ 남성 국장 또는 남성 직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국장 또는 직원이 신청하면 제8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⑪ 국장 -----

----- 10일의 범위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u>자녀</u>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신 설>	<u>위에서 가족돌봄휴가</u>----- ----- ---. 1. ----- ----- ----- ----- -----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 -- 2. <u>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 공식 행사 또는</u> ----- 3. <u>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손자녀</u>----- ----- ----- ----- -- 4. <u>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u>		<신 설> <신 설> 제38조(징계의 효력) ① ~ ⑤ (생략) <신 설>	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⑫ 제1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⑬ 여성국장 또는 여성직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38조(징계의 효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장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이 별정우체국에 국장 또는 직원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본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	---	---

<신 설>

제38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은 직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제36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국장 또는 직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국장 또는 직원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장에 대해서는 관할지방우정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에, 직원에 대해서는 총괄우체국장 또는 국장이 지방우정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직원징계위원회에 지체없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징계위원회에서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경우 지방우정청장은 국장에게, 국장은 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6항은 21년12월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봉 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정받은 경력이 개정 규정에 따라 환산을 등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해구호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사용 중인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일수는 제3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해구호휴가 일수에서 뺀다.

제4조(가족돌봄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30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것으로 본다.